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15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서상열,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윤종복, 이숙자,
이중환, 이효원,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도시숲, 생활숲 등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방문 시민과 반려동물 등이 방제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장소에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병충해”를 “병해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도시숲등의 친환경 방 제)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화학적 방 제를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제 등 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0조의2(도시숲등의 친환경 방 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병해충 ----- ----- ----- -----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 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2(도시숲등의 친환경 방제)제3항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